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8. 23(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7. 7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7. 8
- 라. 상정일자 : 2010. 8. 23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했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조례 별표 2로 신설 (안 제3조)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금고지정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 2009. 6. 10.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3조 제2항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금고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기관 평가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별표2)으로 조례로 정하고
- 안 제4조 제2항에 금고지정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9명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

- 역할 :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평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공개 사항 등
- 구성 : 시의원, 대학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금융전문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 2006년도 금고지정시 위원회 구성 : 9명
 - 시의원 2, 대학교수 2, 변호사 1, 공인회계사 1, 금융전문가 1,
공무원 2

○ 검토의견으로

- 현행 조례 제9조의 출연금의 공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9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배점 부여 및 평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부항목별 배점하한, 순위간 점수편차 기준에 대한 신설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항목 6, 자치단체 추가항목(배점기준 15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다른 항목에 추가 배분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배점기준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 배점기준 <별표>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5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 배점기준 <별표>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추가할 수 없음.
- 배점기준 <별표>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에 세부 항목 추가 및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 추가할 수 없음.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 과당 경쟁 방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1.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u>32</u>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대손충당금 적립률	10 (6) (4) <u>22</u> (7) (7) (6) (2)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2 2	
		<u>20</u>	
3. 시민이용의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5 3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5 5 5 4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 2]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0점)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4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대손충당금 적립률	10 (6) (4) 22 (7) (7) (6) (2)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2 2	
		20	
3. 시민이용의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5 3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5 5 5 4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 2]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0점)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과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4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은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⑩ (생략)</p>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p> <p>②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참 고 자 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행정안전부 기준	행정안전부 조례 예시	현행 조례
계		100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35	34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0	10
	- 국외평가기관	(6)	(6)	(6)
	- 국내평가기관	(4)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25	24
- BIS 자기자본비율	(7)	(9)	(7)	
- 무수익여신비율	(7)	(7)	(7)	
- 자기자본이익률	(6)	(6)	(6)	
- 대손충당금 적립률	-	(3)	(4)	
	※ 항목 추가 및 추가배점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18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6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5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4	4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	-	2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3	2	
	※ 기존 세부항목 추가배점 불가, 항목 추가 가능			
3. 시민이용의 편의성		15	19	18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9	8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5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5	5
	※ 항목 추가 및 추가배점 가능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5	18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5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5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5	5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	3	4
	※ 항목 추가 및 추가배점 가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 사업 추진능력		10	10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5	5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5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추가항목	15	-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타시도 비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34	30	30	30	33	33	31
	- 국외평가기관	10	10	10	10	10	10	10
	- 국내평가기관	(6)	(6)	(6)	(6)	(6)	(6)	(6)
	- 국외평가기관	(4)	(4)	(4)	(4)	(4)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4	20	20	20	23	23	21
	- BIS 자기자본비율	(7)	(7)	(7)	(7)	(7)	(7)	(7)
	- 무수익여신비율	(7)	(7)	(7)	(7)	(7)	(7)	(7)
- 자기자본이익률	(6)	(6)	(6)	(6)	(6)	(6)	(7)	
- 대손충당금 적립률	(4)	-	-	-	(3)	(3)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9	18	15	20	19	18	18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6	6	6	6	6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5	5	5	5	5	5	5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4	4	4	4	4	4	4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	2	-	-	3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	-	3	4	3	-
3. 시민이용의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18	18	26	20	20	20	26
	나. 관내지정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	6	6	5	6	7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8	5	5	8	7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5	6	5	5	6	5	6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5	6	7	5	3	-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19	24	19	20	18	19	1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6	5	5	5	6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5	6	5	5	5	8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4	6	4	5	3	5	5
	OCR센터 운영능력	4	6	4	5	3	-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10	10	10	10	10	10	10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5	5	5	5	5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추가항목	-	-	-	-	-	-	-

□ 인천시 금고 지정 현황

- 금고 수 : 2개 (복수금고)
 - 제1금고 : 신한은행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제2금고 : 농협중앙회 (기타특별회계)
- 약정기간 : 2007. 2. 5 ~ 2010. 12. 31(4년)
- 소관회계 규모 [2010. 1회 추경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소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개)	기금 (13개)	기타특별회계 (20개)
예산액	75,442	61,503	41,837	15,817	3,849	13,939

※ 예산액 소관규모 비율 : 신한은행(82%), 농협(18%)

□ 조례안 공포 절차

- ① 본회의 의결 : 2010. 8. 23
- ② 조례안 이송 : 2010. 8. 23
- ③ 조례규칙심의회(수정가결시) : 2010. 8. 26
- ④ 공포 : 2010. 8. 30
- ⑤ 시보 공고 : 2010. 8. 30

□ 시금고 지정 절차

- ①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 2010. 8.31한
- ② 제출한 제안서 심의 평가 후 심의표 작성 · 제출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 2010.10.31한
- ③ 금고의 지정(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 2010.11.10한
- ④ 금고 지정 결과 시보 공고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 2010.11.20한
- ⑤ 금고 약정 체결(통지 후 20일 이내) : 2010.11.30한